



2016. 2.

2016년예산 지방재정 공시



광 산 구

목 차

< 서 문 >	3
1. 공통공시 총괄	5
2. 예산규모	6
2-1. 세입예산	6
2-2. 세출예산	7
2-3. 중기지방재정계획	8
2-4. 지역통합재정통계	9
3. 재정여건	10
3-1. 재정자립도	10
3-2. 재정자주도	11
3-3. 통합재정수지	12
4. 재정운용계획	13
4-1. 성인지 예산현황	13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14
4-3. 성과계획서	17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8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9
4-6.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
4-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

2016년 광산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 우리 구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4,998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6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 4,380억원보다 618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00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83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8억원입니다.
- ◆ 우리 구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1.4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2.17%입니다.
- ◆ 우리 구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2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구의 전체적인 살림규모는 동종단체에 비해 약간 높으나 동종단체보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경성경비를 절감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wangs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관리실 김수미(062-960-8031)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광 산 구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4,998	4,638	360	4,380	4,086	294
	세 출 예 산	4,998	4,638	360	4,380	4,086	294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21.44	21.43	0.01	28.02	27.36	0.66
	재정자주도[당초]	32.17	31.23	0.94	39.93	38.77	1.16
	통합재정수지[당초]	12	- 4	16	20	13	7
재정운영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광산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9,802	486,017	0	5,784	8,00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25,070	362,690	419,983	463,822	499,80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5,627	100	352,617	100	408,068	100	451,553	100	486,017	100
지방세	46,917	14.86	51,601	14.63	56,864	13.93	61,850	13.70	67,653	13.92
세외수입	26,307	8.34	26,867	7.62	24,076	5.90	27,816	6.16	29,457	6.06
지방교부세	5,735	1.82	5,616	1.59	5,893	1.44	5,893	1.31	5,943	1.22
조정교부금 등	36,667	11.62	36,767	10.43	36,715	9.00	38,377	8.50	46,221	9.51
보조금	200,000	63.37	231,766	65.73	275,927	67.62	309,735	68.59	329,654	67.83
지방채	0	0	0	0	1,400	0.34	800	0.18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7,193	1.76	7,082	1.57	7,087	1.4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광산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9,802	486,017	0	5,784	8,00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25,070	362,690	419,983	463,822	499,80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5,627	100	352,617	100	408,068	100	451,553	100	486,017	100
일반공공행정	15,759	4.99	15,747	4.47	17,467	4.28	17,155	3.80	19,437	4.00
공공질서 및 안전	4,348	1.38	3,210	0.91	2,570	0.63	4,022	0.89	2,217	0.46
교육	1,038	0.33	1,405	0.40	452	0.11	487	0.11	587	0.12
문화 및 관광	6,257	1.98	5,502	1.56	8,498	2.08	7,029	1.56	8,725	1.80
환경 보호	20,602	6.53	24,733	7.01	20,346	4.99	14,262	3.16	21,183	4.36
사회 복지	174,415	55.26	206,539	58.57	251,004	61.51	284,637	63.04	303,495	62.45
보건	7,868	2.49	9,153	2.60	9,908	2.43	13,278	2.94	13,049	2.68
농림해양수산	9,877	3.13	10,710	3.04	13,350	3.27	14,064	3.11	15,282	3.14
산업·중소기업	1,585	0.50	718	0.20	2,787	0.68	3,977	0.88	1,471	0.30
수송 및 교통	5,329	1.69	4,500	1.28	2,215	0.54	2,812	0.62	3,864	0.80
국토 및 지역개발	9,215	2.92	8,363	2.37	9,160	2.24	8,896	1.97	13,025	2.68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3,157	1	3,527	1	4,081	1.00	3,000	0.66	6,048	1.24
기타	56,176	17.80	58,510	16.59	66,232	16.23	77,934	17.26	77,635	15.9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광산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21,869	522,427	522,159	522,538	522,655	2,611,648	0.00%
자 체 수 입	97,676	98,559	99,410	100,149	100,882	496,676	0.80%
의 존 수 입	383,415	387,591	389,752	389,731	389,149	1,939,638	0.40%
지 방 채	0	2,000	0	0	0	2,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779	34,276	32,998	32,659	32,623	173,335	-5.40%
세 출	521,869	522,427	522,159	522,538	522,655	2,611,648	0.00%
경 상 지 출	98,709	99,361	98,931	99,889	98,356	495,246	-0.10%
사 업 수 요	423,160	423,066	423,228	422,649	424,299	2,116,402	0.1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 - 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광산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479,657	516,136	36,479	0.07
광산구	463,822	499,802	35,980	0.07
공사·공단	15,835	16,334	499	0.03
출자·출연기관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은 없습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광산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4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1.44% (19.98%)	486,017 (486,017)	104,198 (97,110)	381,819 (381,819)	0	0 (7,088)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23.20%	22.25%	21.60%	21.43%	21.44%
최종예산	26.04%	27.65%	26.36%	25.36%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동종 유사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며, 연도별 추이를 보며 큰 변화는 없으나 의존재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광산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2.1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2.17% (30.71%)	486,017 (468,017)	156,362 (149,275)	329,654 (329,654)	0	0 (7,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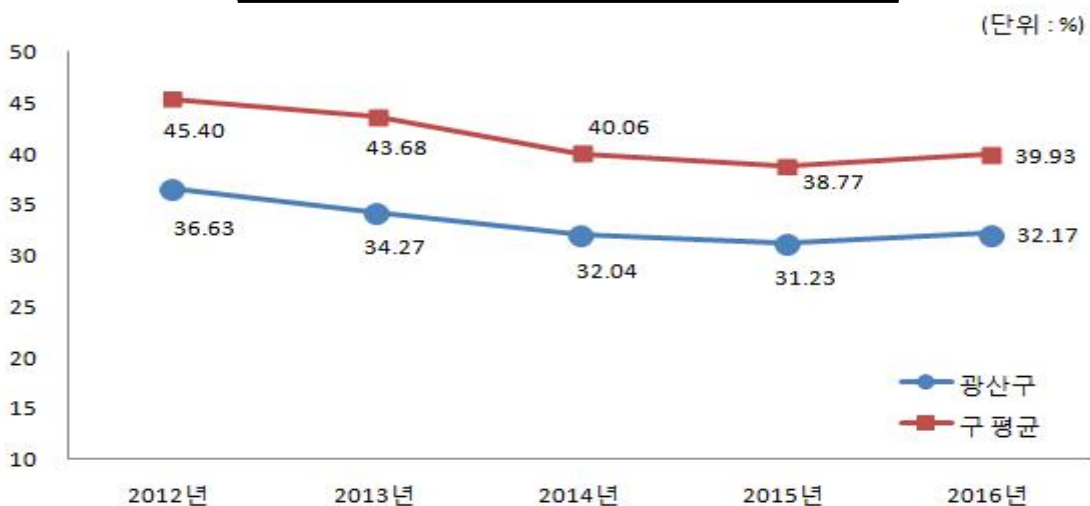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36.63%	34.27%	32.04%	31.23%	32.17%
최종예산	38.03%	39.28%	37.01%	36.17%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동종 유사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며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광산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3,028	490,788	159	100	-59	8,907	490,729	-7,701	1,206
일반회계	478,958	484,310	159	0	-159	6,900	484,151	-5,193	1,707
기타 특별회계	3,777	5,784	0	0	0	2,007	5,784	-2,007	0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293	694	0	100	100	0	794	-501	-501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5,084	-5,850	-11,175	-9,356	-7,701
통합재정수지 2	634	246	-1,261	-421	1,206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광산구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5	146,198
여성정책추진사업	32	81,3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1	64,55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246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99,802	764.6	모델안 2~3준용

-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반영된 참여예산은 765백만원으로 전년 483백만원보다 28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64.6	
1	생명농업과	신창동 매결마을 농로보수	15	신창동
2		임곡 연동 경로당 앞 배수로 설치	15	임곡동
3		임곡 내기 수로정비	10	임곡동
4		임곡 오룡동 입구 철길도로 침수개선	25	임곡동
5		삼도 신광마을 용배수로 개거 설치	25	삼도동
6		본량 삼거리 버스승강장 옆 배수로 보개사업	5	본량동
7		미나리 홍보탑 설치	15	동곡동
8	공원녹지과	송정공원(말미산)운동기구 설치사업	30	신흥동
9		무양공원 시설물 정비보강 사업	30	첨단2동
10		월곡공원 운동기구 바닥면 정비	10	월곡1동
11		신가공원 계단정비 및 화단조성	30	신가동
12		우산제5호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18	우산동
13		하남제2호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12	월곡2동
14		비아제5호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8	비아동
15		신가어린이공원 제1호 놀이시설물 정비	20	신가동
16		임곡동 가로화단 조성	10	임곡동
17		완충녹지 수목 식재	10	첨단1동
18	건설과	반사경 설치 및 위치 변경	1.3	송정1동
19		라인2차 아파트 출입구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설치	3	송정2동
20		(구)유성사거리 과속방지턱 설치	4	송정2동
21		도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10	도산동
22		횡단보도 보행로 설치	30	도산동
23		금호아파트 인도 포장(연차사업)	30	월곡1동
24		일신아파트 주변 교통환경 개선	0.5	월곡2동
25		하남제2호 어린이공원 인근 주택가 보도블럭 정비	40	월곡2동
26		진흥중학교 주변 가드레일 설치	5	신창동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27		구촌반촌길 도로 반사경 설치	1	신창동
28		송촌마을 안길 포장	20	평동
29		침산마을안길 도로 포장	15	동곡동
30		어룡초, 정광중고 통학로 확장사업	30	어룡동
31		양촌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40	삼도동
32		오운로 가로등 설치	20	삼도동
33		신가부영 후문 보행등 설치	1	신창동
34		하나중학교 앞 안전휀스 설치	25	수완동
35		송정동초등학교 주변 스킨존 시설설치	40	신흥동
36	교통지도과	수완아이(eye)프로젝트 밝은 안심 정류장 조성	7.5	수완동
37		신흥동 유개승강장 설치	4	평동
38		어룡동 유개승강장 설치	4	어룡동
39		비아 동원촌 유개승강장 설치	12	첨단1동
40		청소행정과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CCTV설치	18
41	주민자치과	아파트공동체 문화 조성	6.3	운남동
42	송정1동	공향산책로 일대 쉼터 조성	15	송정1동
43	송정2동	송정동 맛집 안내판 설치	10	송정2동
44	운남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	14	운남동
45		엘로카펫 추가설치	20	운남동
46		물품 공유 확산 인프라시설 확대설치	20	운남동
47	임곡동	임곡 꿈쟁이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10	임곡동
48	첨단1동	첨단둘레길 재정비사업	20	첨단1동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광산구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96	195	178	491,764	457,021	34,743
기획관리실	1	2	4	6	6,183	7,518	-1,335
혁신정책관	1	4	4	4	552	528	24
공보관	1	1	1	1	774	615	159
감사관	1	1	1	2	104	86	18
복지문화국	1	27	56	44	313,389	290,202	23,187
경제환경국	1	16	33	29	48,192	41,229	6,963
안전도시국	1	12	27	32	21,844	19,971	1,874
자치행정국	1	18	35	33	83,435	79,416	4,019
보건소	1	14	32	25	13,905	14,069	-164
의회사무국	1	1	2	2	1,199	1,100	99
동주민센터	0	0	0	0	2,187	2,287	-10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1.44	32.17	62.45	11.68	72.35	63.6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
	부단체장	41	41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0	270	-2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85	85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3	63	-
	의원국외여비	32	38	6
지방보조금		4,842	1,467	-3,37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292	1,790	-502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당 1,492천원	1인당 1,479천원	-13천원
공무원 일·숙직비		1일/야당 50천원	1일/야당 50천원	-

- ▶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lofin.mo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의회 관련경비 중 의원국외여비는 편성기준 예외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국외교류·협력 차원 추진되는 교류행사 참석등을 위해 6백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2,292백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야하나 통장 기본 수당 502백만원이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 지방보조금 기준액=전년도 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

4-6.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5년에 우리 광산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 해당없음 -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5년에 우리 광산구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 해당없음 -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붙임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군포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경남 양산시	경기 평택시 경기 광주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경기 시흥시 경기 김포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광명시 강원 춘천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	경기 파주시 강원 원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거제시
	시-(3)	경기 이천시 경기 오산시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경기 구리시 경기 하남시 충북 제천시 경북 김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의왕시 충남 서산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경기 과천시 충남 당진시 경남 통영시	경기 포천시 강원 강릉시 전남 목포시
	시-(4)	경기 동두천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천시	경기 여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남원시 경북 상주시	강원 동해시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경북 문경시	강원 태백시 충남 논산시 전남 나주시 경남 사천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계룡시 경북 영주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부산 기장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전남 영암군 경남 거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충남 예산군 전남 무안군	인천 강화군 충북 진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전남 해남군 경남 창녕군
	군-(2)	경기 연천군 충남 서천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강원 정선군 충남 태안군 전남 장성군 경남 고성군	충북 영동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하동군	충북 괴산군 전북 부안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함양군	충남 금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합천군
	군-(3)	인천 옹진군 강원 고성군 전남 보성군 경북 고령군	강원 횡성군 충북 옥천군 전남 장흥군 경북 성주군	강원 영월군 충북 증평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예천군	강원 평창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덕군 경남 남해군	강원 철원군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산청군
	군-(4)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전북 임실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강원 양구군 충남 청양군 전남 곡성군 경북 청송군	강원 인제군 전북 진안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양군	강원 양양군 전북 무주군 전남 함평군 경북 봉화군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진도군 경북 울릉군
자치구	구-(1)	서울 성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송파구	서울 노원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동구	서울 은평구 서울 관악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초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남구
	구-(2)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중구 서울 중랑구 서울 금천구	서울 용산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도봉구	서울 광진구 서울 서대문구
	구-(3)	부산 진구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울산 북구	부산 사하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인천 중구 인천 계양구 대전 서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구-(4)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부산 사상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북구 대구 중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부산 동구 부산 금정구 대구 서구 대전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연제구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인천 동구 대전 대덕구